최신 시행 법령

1. 소재・부품・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

[시행 2023. 3. 15.] [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4호, 2023. 3. 15., 일부개정]

【주요내용】

무인항공 및 무인비행장치를 소재・부품의 범위에 추가하고, 기타 무선통신장비, 방사선 장치, 시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장비의 범위에 추가하여 소재・부품・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**(별표 1).**

2.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시행 2023. 3. 20.] [기획재정부령 제978호, 2023. 3. 20., 일부개정]

【주요내용】

(1) 비거주자 등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(零稅率)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대신에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**(제2조제1호).**

(2) 최종물품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도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을 신청할 때 원산지소명서 대신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함**(제10조제1항제4호가목).**

최신 시행 법령

3. 전기사업법 시행령

[시행 2023. 3. 21.] [대통령령 제1865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【주요내용】

(1)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품질 기준 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**(제5조의5제5호의2).**

(2) 수소발전사업자가 발전한 전력을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전력시장 내 전력거래 원칙의 예외로 인정함**(제19조제1항제5호 신설).**

(3)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의 상한을 지역냉난방사업과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유형에 관계 없이 50만 킬로와트로 상향함 **(제59조의2).**

4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23. 3. 21.] [대통령령 제33339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【주요내용】

(1)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입주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용적률 완화를 요청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반도체 공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위한 생산시설의 증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**(제46조제14항 신설).**

(2)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조성이 완료된 대지의 대지면적을 확장하려면 종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, 이 경우 해당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장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여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**(제57조제1항제1호의2바목 신설).**

최신 시행 법령

5.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시행 2023. 3. 22.] [총리령 제1872호, 2023. 3. 22., 일부개정]

【주요내용】

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)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할 때 어느 한 곳의 영업에 대해 영업소별로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곳의 영업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의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**(제19조제2항).**

6. 문화예술진흥법

[시행 2023. 3. 28.] [법률 제18984호, 2022. 9. 27., 일부개정]

【주요내용】

문화예술을 "문학, 미술(응용미술을 포함한다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, 만화, 게임,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, 정신적,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(印象), 견문,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"로 정의하여, 문화예술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고, 게임,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분야를 문화예술에 추가함**(제2조제1항제1호).**

최신 시행 법령

7.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3. 28.] [법률 제18985호, 2022. 9. 27., 일부개정]

【주요내용】

(1)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“온라인비디오물”로 정의함 **(제2조제12호의2 신설).**

(2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함**(제50조의2 신설).**

(3) 각각의 통선은 여객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제 또는 보험회사가 여객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함(별표 6 비고 제3의4)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조정 요구, 직권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결정 취소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**(제50조의6 신설).**

(4) 여객에 대하여 자체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 등 불법 온라인비디오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취급을 거부・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하도록 할 수 있음**(제70조제7항 신설).**

최신 시행 법령

8.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[시행 2023. 3. 31.] [대통령령 제33369호, 2023. 3. 31., 일부개정]

【주요내용】

(1)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・길이 등의 변경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대상이 되는데, 종전에는 재협의 대상이던 "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・시설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"를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함**(제54조제2항).**

(2)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발생설비의 설치 시 태양력・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으나, 앞으로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**(별표 3 제3호 및 제17호).**